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2017

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

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YEARY PLAN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4 April	5 May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S U W O N S I C I A L S E C U R I T Y C O M M I T T E E

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01	04 불임 및 부록	16
1. 운영목적	02	1. 불임	17
2. 구성	03	불임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예시	18
3. 기능	04	불임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9
0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개요	05	불임2-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서	20
1. 추진근거	06	불임3-1 위촉장	21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동협의체의 변화	07	불임3-2 위촉동의서	22
3. 동 협의체 구성목적	08	불임4 비밀보장 준수 서약서	23
4. 동복지허브화와 동협의체의 관계	09	불임5 사퇴확인서	24
5. 시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연계	10	불임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25
6. 위원회 구성	11	불임7 회의록	26
7. 기능	12	불임8 회의 참석자 확인	27
0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활동	13	불임9 복지자원 리스트	28
1.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14	불임1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29
2. 자원발굴 및 연계	15	2. 부록	30
3. 지역특화사업	16	부록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전문	31
		부록2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표준안	32
		부록3 사각지대 관찰 tip	3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0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개요

S U W O N S I C I A L S E C U R I T Y C O M M I T T E E



01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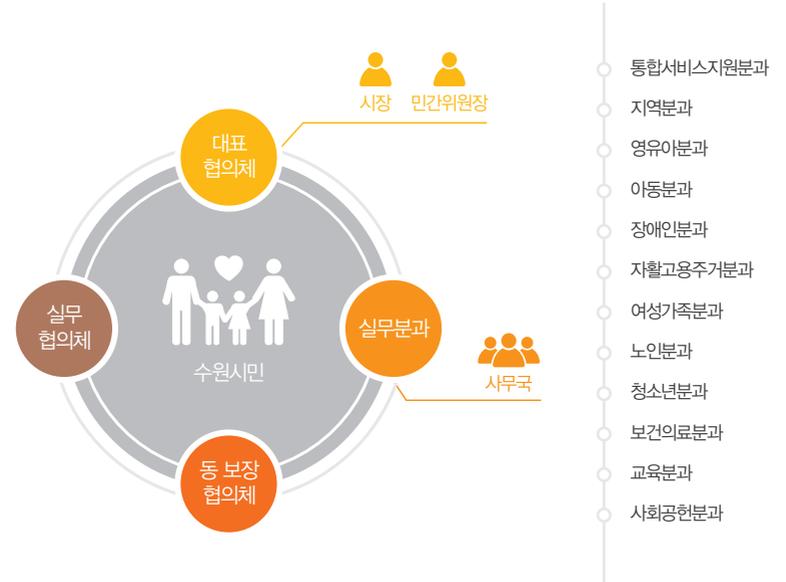


“ 시민이 주인 되는 복지공동체 ”

-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



02 구성



구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추출	시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인원수	10명이상 40명 이하	10명이상 40명이하	분과별 10명이상 20명 이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위원장	공공	지자체 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민·관중 1명)
	민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회의	소집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개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 진행	
	횟수	연 3회 이상	연 6회 이상



03 주요기능



주요 기능	내용
협치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 자문
연계(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내 각 분과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0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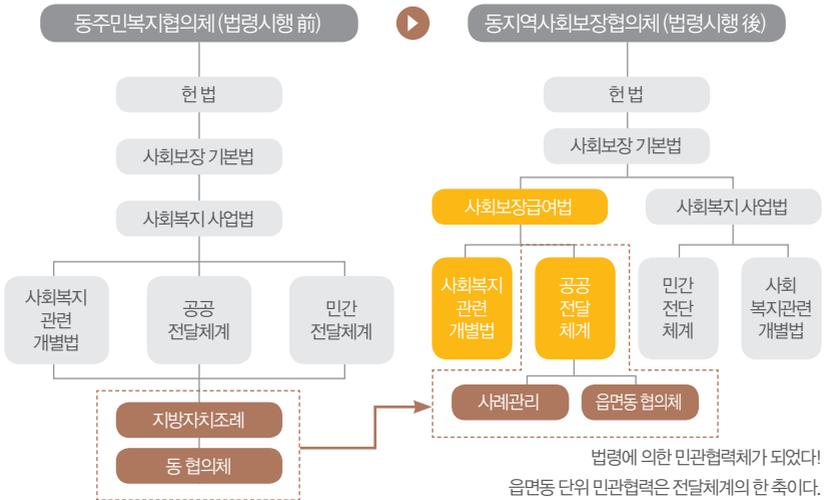


01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민관협력)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02 사회보장급여법(근거법 약칭) 시행에 따른 동협의체의 변화

- 중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단위 지역복지 민관협력 중시



03 동 협의체 구성목적

-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과 지역사회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
- 취약가구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

04 동 복지허브화와 동 협의체의 관계

동복지허브화 : 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현 하는 것

- 동복지허브화의 주요내용

- 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담당하여 맞춤형 복지구현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 상담, 취약 계층방문· 유선확인 모니터링
- 통합서비스 지원 |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연계 활성화
- 민간조직· 자원 활용 |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지원대상· 자원 발굴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

● 동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개편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민간과 공공의 협력, 제도복지와 지역복지의 협동 필요
 - 동협의체 등 지역주민 활동과 동복지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임

05 시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연계

● 공통점

- 지역성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체계마련
- 참여성 |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추동력으로 작용
- 협력성 | 네트워크형 조직 기구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기구
- 통합성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 차이점

구분	시협의체	동협의체
구성방법	시군구청장 위촉	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규모	10명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네트워크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분야 기관·단체의 민간대표와 관련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지역 복지증진에 관심과 애정 있는 지역주민
보장대상	수원시민	동 지역주민
위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지역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복지위원의 대표자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읍장, 면장, 동장 ②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③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복지위원 ⑥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단체 구성원 ⑦ 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市-洞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

- 동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운영
- 동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운영컨설팅 지원
- 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 등을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 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시민의 주인 되는 복지공동체 구축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기반이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임.

거버넌스의 개념 :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06 위원의구성

구분	내용	
구성방법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남,녀의 성비가 모두 60%를 초과 할 수 없음)	
인원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자격	당연직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 • 맞춤형복지팀장 또는 총괄팀장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단체 구성원 • 지역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위촉기간별 기수를 설정하여 기수의 잔여기간으로 위촉하며 연임가능 (1기: 2016.10.26.~2018.10.25.) ※ 신규위원 (동장)추천→市로 매월 20일까지 추천, 익월 1일자로 위촉 ex) 1기 임기중 신규위원 위촉→ 위촉일~2018.10.25. 	
위원장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동장=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위원중 호선 선출】 ※ 민간위원장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으나 2년마다 재선출	
회의	회의소집: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통보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정례회의: 연 6회이상 *조례 제 11조 ①,②항 준수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경우 	

- 동 협의체 위원 구성시 위원의 다양성 · 보편성 · 지역성 · 자발성 등 고려



07 기능

4대 기능	내용
복지사각 지대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체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 지역주민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센터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 내 통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위원위촉이 필요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마을복지 자원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실천 기회제공 • 관내주민이 지역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조사, 나눔가게 추진, 마을음악회 복지서비스 기관 및 다양한 자원과 수요자 연계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내 구성되어 있던 조직들 간 연계를 통해 지역연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경로당, 동 유관단체 등 조직간 연계사업 추진
지역특화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문제 파악 후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추진 • 동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관공서, 다양한 민간 기관과 사업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내 병 · 의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사업협약 - 공동모금회 · 관내병의원과 함께 하는 의료나눔카드 배포사업, 관내 상가와 함께하는 잉여식품 나누기, 재고물품 나눔바자회 추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0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활동



01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1) 복지대상자 발굴

● 복지대상자 발굴의 목표



● 발굴대상

명백한 사회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사회 보장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복지욕구가 미해결된 복지 소외계층

탈 수급자	사회보장서비스 수혜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주민
차상위 계층	육구대비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주민
신규발굴대상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불임6 동 협의체 회의 / 불임7 회의록 / 불임8 회의 참석자 확인

● 복지대상자 발굴 방법

-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을 활용
 - ※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 · 발굴 필요
- 단전 · 단수 · 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 · 학대 · 유기 · 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 · 청소년 등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2) 복지대상자 발굴 및 처리과정



동협의체 위원 등

동 협의체 위원만이 아니라 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 발굴시 협의체 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

발굴 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동 복지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자원 연계 순서

-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지원 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서비스는 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0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1) 지역자원 발굴

지역자원 발굴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복지욕구 대비 부족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집중 개발
- 복지자원 현황을 동 주무관, 시 협의체 공유
- 대상주민을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현황파악
-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없는 나눔실천 기회 제공과 지속적인 인정과 보상활동 추진
예) 식당(홀몸 어르신 식사대접), 안경점(돋보기 지원), 제과점(생일 케이크 제공)
- 관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친목모임 등에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동참 방안 제시
- 자원발굴시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엄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역자원의 종류

인적자원	자원봉사자, 동 협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물적자원	상점, 마을기업, 마을 협동조합 등

▶▶▶ 불임6 동 협의회 회의 / 불임9 지역자원 리스트

2) 지역자원발굴의 유형 및 참여방법

● 자원발굴의 유형



● 지역자원 발굴의 유형의 예

- 네트워크 구축형 자원발굴
 - 발굴된 자원들은 온·오프라인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ex) 착한가게(수익금 일부 정기후원업체 발굴), 우리동네서포터즈(정기후원 CMS개발)
- 단기 집중형 자원발굴
 - 재난 및 재해, 지역 내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모집활동
 - ex) 겨울철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음악회, 김치 한포기 더 나눔 행사 등





● 나눔 참여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별 계좌를 활용한 나눔 참여
- 동 주민센터 및 동 보장협의체 위원에게 모금방법 문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선연락 031-898-9851~4

3) 지역자원연계 방법 및 절차

● 서비스 지원대상 절차

- 행복e음 공공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가구 사전 발굴 및 지원



- 동 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민간자원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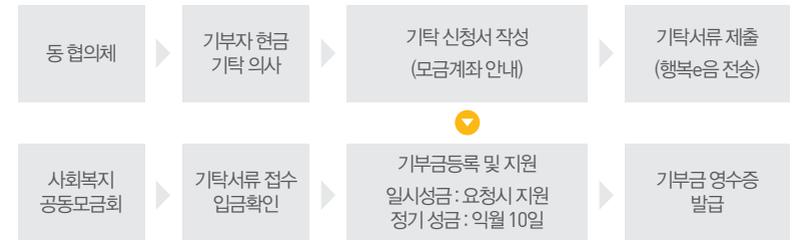
▶▶▶ 불임6 동 협의체 회의



● 지역자원연계 시스템

- 자원연계 관리 시스템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용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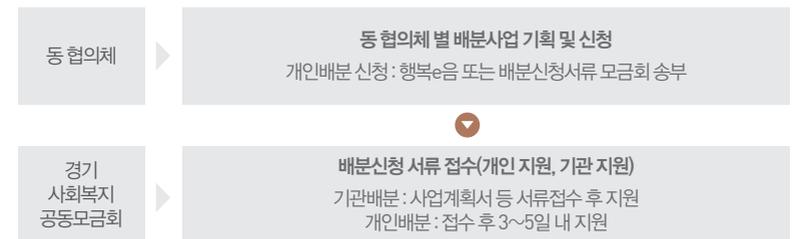
〈지원대상사를 지정한 경우: 동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신청〉



〈지원대상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로 CMS신청서 송부〉



〈사업 및 대상자 배분신청 방법 (단, 동 자체 사업수행시 동 협의체 단체등록 필요)〉



▶▶▶ 불임10 동 협의체 고유번호증 신청방법

● 수원N 소개

- 수원시 나눔브랜드 수원N
 - 수원시 나눔브랜드 수원N을 통해 지역 내 나눔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N 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항 및 목적을 안내합니다.
- 수원N 사업추진계획
 - 수원N 시스템을 통한 사업추진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진행 방식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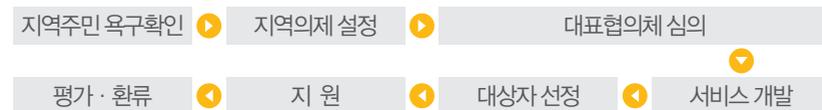


* 사이트 참고 - 수원N URL : <http://suwonn.kr/>

03 지역특화사업

1)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 지역특화사업의 기획단계



- 지역주민 욕구확인
 - 지역의 상황에 대한 주민 욕구 확인(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후 회의를 통한 지역의제설정
 -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회의
- 대표협의체 심의
 - 동 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함. ※ 보 건복지부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p100)
- 서비스 사업개발
 - 심의된 안건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제에 맞는 적합한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사업 진행 (재능기부 및 후원)
 - 지역상권 및 개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
- 대상주민 선정
 - 지역특화사업 후 대상(개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논의
- 지원
 - 사각지대 주민에게 물적, 인적 지원 진행 후 만족도조사
 - 지역사회보장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 (거리정화사업, 방과후 교실 등)
- 평가 환류
 - 지역특화사업 진행 후 평가회의 진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지역특화사업의 사례

● 사례1 - 사각지대발굴

- 추진배경 : 매탄2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개인적 생활환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추진방법 :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인근 상가 및 경비실에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함.
- 추진성과
 - 사각지대 발굴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대상자를 발굴
 - 파급효과로 나눔문화 확산
 - 지역사회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가져주세요!**

행복한 우리동네 「열린이웃 커뮤니티」안내

- 매탄2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 협력을 통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만들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길과 진화 한봉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주위에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매탄2동주민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수시
■ 신고하실 곳 : 보건복지콜센터(☎129) / 매탄2동주민센터(☎228-8623, 8626)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 사례2 - 자원발굴

- 추진배경 : 부천시 어르신 인구는 86,218명이며, 고강1동 어르신의 인구수는 1,864명으로 부천시 어르신 인구밀집지역 3위로 홀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
- 추진방법 : 해결방안으로 홀몸 어르신을 위하여 지역의 제과점 및 떡집을 연계하여 생신 잔치 진행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하였고, 방문 미용으로 어르신청결을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 추진성과
 -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 미용실, 뽕집 등 자원간 지속적 협력으로 안정적인 자원자원확보
 - 지역사회 안전망의 확대(신변확인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고강1동 복지협의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 지역의 자원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활동내역

- **지원대상 심의-의결** : 월회 복지협의체 위원이 모여 자원발굴, 지원 대상 등을 논의하고 심의합니다.
- **지역자원 발굴** :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 ❖ 명절 백미지원 : 50가구 50포 지원
 - ❖ 기부금 모금(고강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계좌로 전용통장 개설)-2,355,220원
※ 다문화가정 결연 1가구,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예정)
- **재능나눔** :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 ❖ 이미용봉사 : 거동불편 어르신 12가구 방문 이미용 봉사(매월)
 - ❖ 이불세탁봉사 : 홀로 사는 어르신 14가구 이불세탁 봉사(소시)
- **특화사업 발굴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 ❖ 홀로 사는 어르신 방문 생일 잔치 : 26명



● 사례3 - 자원발굴

- 추진배경 : 호매실동은 재개발로 인한 지역 내 빈부격차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 추진방법 : 이에 동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동 내의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장면 DAY사업을 진행하여 기부금을 조성하였고 보편적으로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추진성과
 - 지역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한 모금활동진행
 - 선별적인 지원으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 활동의 기회가 되었음.
 - 모금활동에 대한 인근 상가 참여를 유도하여 업체의 다양화

자장면 DAY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판매하는 자장면 판매금액 전액은 불우한 이웃돕기에 쓰여집니다.





04

붙임 및 부록





▶▶▶ 붙임3-1 위촉장(시장위촉)

제 호

위 촉 장

귀하를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 기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기 임기 : 20 . . . ~ 20 . . .】

20

소 속 : 장안구 OO동

성 명 :

수원시장 귀하



▶▶▶ 붙임3-2 위촉동의서(동 협의체 위원)

위 촉 동 의 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OO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동의합니다.

20

소 속 :

성 명 : (서명)

연락처 :

OO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붙임4 비밀보장 준수 서약서

비밀보장 준수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OO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중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및 자원 발굴·연계)와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가 개인·단체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활동 규정을 준수하며 활동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9조(비밀유지의무), 제54조(벌칙)
-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붙임5 사퇴 확인서

사퇴 확인서

본인은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_____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퇴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 . . .

소 속 :
성 명 : (서명)
연락처 :

수원시장 귀하



▶▶▶ **붙임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지역특화 등)

- **운영원칙**
 -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수평적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공공의 일방적 개입 및 주도를 자제
- **회의의 종류**
 - 정기회의
 - 동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서면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공지해야함.
 - 동 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임시회의
 - 동 협의체 위원장은 긴급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 가능
 - 동 협의체 정기회의의 준비를 위해 필요시 임원회의를 개최 가능
- **주요안건**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 동 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 **회의의 진행**
 - 동 협의체 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되, 어려울 경우 공공위원장 주재
- **회의록 관리·작성**
 - 동에서는 회의장소 제공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관리



1) 동 협의체 사례회의

- **사회복지 사례회의와 동 협의체의 사례회의**

구분	내용	
	동협의체 사례회의	사회복지 사례회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에 사각지대 대상자 • 공공부조서비스가 불가능한 주민 •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지원가능 대상자 • 3가지 이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회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 동 협의체 위원 및 기타 단체장 • 동 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사례관리담당 사회복지사 • 동 담당 주무관 • 기타 지역 사례관리 전문가
의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서비스 자원의 연계 •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서비스 자원의 연계 • 프로그램 및 복지체계를 이용한 해결 중심 논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주민에 대한 논의 • 지역에서 자활할 수 있는 민간자원 연계 •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넘어선 공적부조의 자원 연계 • 체계적인 자활 • 욕구조사를 토대로한 맞춤형 서비스

- **동 협의체 사례회의 특이사항**
 - 위기가구발굴회의의 내용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심의·의결
 - 맞춤형 복지팀에서 요청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 위기가구 회의시 유의점
 - 위기가구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 회의진행시 개인의 강점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회의진행
 - 위기가구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 공적지원이 불가할 경우 민간자원에 대한 연계 논의

2) 동 협의체 자원발굴 회의

● 자원발굴 회의의 특이사항

- 자원발굴회의의 내용
 - 지역자원발굴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심의·의결
 - 지역자원발굴에 따른 대상주민을 맞춤형으로 선정
 -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
- ex) 상인연합회장 협의체 위원 위촉, 캠페인을 통한 자원발굴
- 자원발굴 회의시 유의점
 - 유·무형의 자원 발굴시 지속적인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스트로 작성하고 수원N에 등록 및 게재
 - 타 동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협력적인 자원발굴방안 모색
 - 상대적으로 자원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은 시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
 - 특정주민 이외에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개발사업 추진회의

3) 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회의

● 지역특화사업 회의의 특이사항

- 지역특화사업회의의 내용
 -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회의 진행 (시장활성화 사업을 통한 모금 활동, 주민계몽을 통한 교육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모금활동 등)
 -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에 대한 회의
 - 사업계획·진행, 과정, 평가에 대한 일련의 회의 내용으로 진행
- 지역특화사업 회의시 유의점
 - 지역성을 반영한 의견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안건으로 제시
 - 동 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을 지향(※ 한 가지 영역을 진행하는 사업은 특화사업이 아님.)

※ 지역특화사업 지향의 예

00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① 현재 전봇대 주변 환경이 불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이에 환경개선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특히 심각하게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②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③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④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음.

- ① 환경적인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되어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음
 - ②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부터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실시하기로 정함
 - ③ 우선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명시함
 - ④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
 - ⑤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의 지속성
- 즉, 하나의 사업을 통하여 두 세가지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 지역특화사업 지향의 예

00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소득 ① 고령층이 늘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원하기로 정함.

- ① 고령층만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된 대상자만을 선정
- ② 모금캠페인은 고령층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성이 없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부록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전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05.09.28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06.06.16 조례 제2626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06.27 조례 제2679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 2009.10.01 조례 제2880호

(일부개정) 2010.11.17 조례 제2944호

(일부개정) 2012.06.11 조례 제3123호

(전부개정) 2016.09.28 조례 제3587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심의·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1.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 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 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
- ② 동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 10조(사무국)

- ①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7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1조(회의)**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 연 6회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관계기관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연구·조사 의뢰)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5조(수당 등) 대표·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조(협의체 운영지원)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6 조례 제2626호)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9.10.0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7 조례 제2944호)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8 조례 제3587호)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록2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표준안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표준안

제 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기능) 동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등을 상시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①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②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④ 그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구성등)

- ① 동협의체 위원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으며, 동별 자율적으로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동장은 위촉 위원 추천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성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④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의체 위원을 발굴·조사반과 나눔·지원반으로 나누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기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자문·조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원과 같고 자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 5조(임기)

-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2년마다 재위촉)할 수 있으며 동장과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동 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동협의체 위원은 최초 위촉일로부터 매 2년마다 기수를 지정하여 위촉하며, 중도 신규위원 위촉의 경우 현 기수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여 위촉하고, 차기 기수에 재위촉할 수 있다.

제 6조(직무)

-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하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시협의체”라 한다)에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민간위원장은 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의사수렴을 통한 지역외제를 발굴하고, 공공위원장은 동 협의체 위원 위·해촉 건의 및 위원 결속력 강화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동 협의체 위원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복지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한다.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2.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협력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활용체계 구축
 3. 취약가구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4.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 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 마련
 5. 그 밖의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 7조(간사)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되,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장이나, ○○동 주민센터의 총괄팀장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 8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토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회의및의사)

- ①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동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서면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동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기타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11조 ①항, ②항을 준용한다.

제 10조 (회의록)

- ①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개최 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조 (비밀준수)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2조 (기타)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 부록3 사각지대 관찰 tip

1) 한부모

- 어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 야간시간 홀로 있는 자녀의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집 주변, 놀이터)
- 만취해 있는 보호자의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 어린자녀 돌봄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연체 통지서가 눈에 띈다.
- 어린 자녀들의 몸에 멍 자국이 있다.
- 어린 자녀들이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2) 정신장애인 / 알코올

- 손자녀의 위생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조부모의 건강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긴 것으로 관찰이 된다.
- 친구들이 자주 집에 오거나 삼삼오오 몰려다닌다.
-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다.
- 조부모가 갑자기 평상시와 다르게 기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3) 장애인

- 홀로 생활이 곤란해 보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장기구 없이 생활하고 있다.
- 장애와 관련해 주거지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옥탑방, 가파른계단 등)
- 자주 마주치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수 없다.



4) 출소자

- 생활할 공간이 없어 노숙이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한다.
- 같은 장소 특히 고정된 장소나 가정 등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보인다.

5) 아동

-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 반복해서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된다.
- 학교를 가지 않고 배회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 늦은 시간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 몸에 학대를 당한 것 같은 흔적이 관찰된다.
- 절도 등의 일탈행동을 한다.
- 불량학생들과 어울려 다닌다.
- 친분이 있는 사람을 갑자기 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6) 기타

- 주거지 실내외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다.
-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고/질병 상황에 처해 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발행일

발행처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